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건물관리주체의 점유자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 제한 금지 등〉
■ 이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039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건물관리주체의 점유자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 제한 금지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주회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7. 20.

다. 회부연월일 : 2026. 7.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집합건물의 다회선계약은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건물관리주체가 취하는 반면 서비스 선택의 제한 등 부담은 점유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집합건물에서는 건물관리주체가 건물 내 통신설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의 독점계약을 주도함으로써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건물관리주체를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리점·판매점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여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 나.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신설).
-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건물관리주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7항 및 제93조제5항 신설).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한 자 및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부과·징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도록 함(안 제104조제5항제7호의3 신설 및 같은 조 제6항).

Ⅲ. 검토의견

1. 건물관리주체의 점유자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 제한 금지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대리점·판매점 등이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하는 경우를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로 간주하고,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 체결 시 정당한 사유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건물관리주체의 금지행위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3항, 제51조제7항 및 제104조제5항·제6항 등).

현행	개정안
제50조(금지 행위) ① (생략)	제50조(금지 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② ----- ----- ----- ----- -----

현행	개정안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③ (생략)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 ⑥ (생략) <신설>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④ (생략)	-----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5호의3----- ----- ----- -----. ----- ----- -----. ③ 제1항제5호의3에 따른 건물관리주체는 같은 호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건물관리주체가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관리주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illegible]

현행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제4호의2·제4호의8부터 제4호의14까지·제4호의17·제4호의18· <u>제4호의20·제8호</u> ·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같은 항제4호의15·제4호의21·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 ----- ----- ----- ----- ----- <u>제4호의20·제7호</u> <u>의3·제8호</u> ----- -----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와 같은 조 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집합건물¹⁾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²⁾하고 있음.
- 이는 집합건물의 전기통신서비스 대부분이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체결한 다회선 계약을 점유자가 이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점유자에게 건물관리주체가 계약한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임.
- 그런데,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계약상대방인 건물관리주체가 점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와 대리점, 판매점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채위탁 받아 수행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애플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의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 등을 점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점유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 경우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이에 개정안은 대리점, 판매점 등 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여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할 경우 이를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로 간주하는 한편,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정당한 사유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 추가로, 개정안은 건물관리주체에 대한 규범력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의무를 위반한 건물관리주체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을 통해 건물관리주체가 체결한 다회선 계약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점유자의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관리를 통해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³⁾으로

3)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않는 건물관리주체를 현행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법체계의 일관성 및 통일성이 유지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건물관리주체의 의무 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조사⁴⁾에 해당함.

-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조사대상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⁵⁾할 수 있고,

4)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사실조사 등)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대리점·판매점

3.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 제2호의 대리점·판매점을 제외하고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⁶⁾를 할 수 있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사실상 강제력을 가짐.

-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⁷⁾.

○ 그런데, 개정안은 건물관리주체의 의무위반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고, 점검의 방법, 점검의 사전 고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자료 미제출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점검”이 행정조사에 해당하는지 불

6) 「전기통신사업법」 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가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나 물건이 제50조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7)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사실조사 등)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해당 조사대상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명확함.

- 만약, 개정안의 “점검”이 단순한 사실적 행위가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건물관리주체의 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의미할 경우, 이는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임.
- 이 경우 점검 및 자료제출 요청을 통해 건물관리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법의 “조사”와 같이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함께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자료제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추가로,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다르게 “점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사와 점검이 모두 동일한 성격의 행정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수범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셋째, 개정안 건물관리주체에 대한 점검 업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업무에 관하여는 위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건물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전국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건물관리주체의 선택권 제한행위 관련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직접 수행 체계로는 전국 단위의 현장 밀착형 조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수행하는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넷째,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관하여 사실조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의 거부·방해·기피⁸⁾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미이행⁹⁾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건물관리주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건물관리주체의 의무 위반 확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점검을 거부·방해

8)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동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8.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관하여 적시하고 있으나, 실제 개정안의 내용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다섯째, 개정안은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이 법 시행 이후 건물 관리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시행 이후 기존의 계약이 갱신·연장·변경되는 경우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하여도 개정안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수정동의

- 실제 건물 내 통신설비를 통제하고 독점계약을 주도하는 건물관리 주체를 규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건물관리주체에 대한 점검 및 자료제출 요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기존 계약의 갱신·연장·변경시 발생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관리주체 간 규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용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수정동의

-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성에는 동의하며,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에 다회선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KT: 수정동의

- 집합건물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건물관리주체에도 직접적인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관리 주체 간 책임 중복 및 과도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귀속 및 위반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5